

## 하도급 제도 개편(법 제29조) 주요내용

### 1 일괄하도급 금지(제1항)

- 도급받은 건설공사 전부 또는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요부분 전부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불가
  - 다만, 수급인이 계획,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건설사업자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
    - ㉠ 전문공사를 업종별로 분할하여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각각 하도급 하는 경우
    - ㉡ 도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행해지는 공사로서 당해 지역의 중소건설사업자 또는 협력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

### 2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(종합건설업체 포함)의 하도급 제한(제2항)

- 다만, ㉠ 발주자 서면 승낙 및 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\*
  - (종합이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함)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하도급 가능
  - \* 하도급 하려는 공사가 도급받은 전체공사 금액의 20%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신기술·특허공법 등이 적용되는 공사

### 3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에 대한 하도급 제한(제5항)

- ㉠ 발주자 서면승낙 및 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\*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하도급 가능
  - \* 하도급 하려는 공사가 도급받은 전체공사 금액의 20%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신기술·특허공법 등이 적용되는 공사

### 4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에 대한 하도급(제2항, 제4항)

-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으려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종합공사에 대해 하도급 가능
  - 다만, 1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원도급(전문업체를 포함) 받은 경우에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 가능(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불가)

### 5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재하도급 제한(제3항)

- 종합건설사업자가 재하도급 가능한 경우 : 하도급받은 종합건설사업자는 직접시공이 원칙이나,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아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
- 전문건설사업자가 재하도급 가능한 경우 : ㉠ 수급인의 서면승낙\* 및 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\*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하도급 가능
  - \* ㉠ 하도급받은 공사의 20% 이내, ㉡ 신기술·특허공법 등이 적용되는 공사, ㉢ 하수급인의 재하도급대금 지급보증(또는 직불)과 재하수급인이 사용한 자재·장비대금 및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 합의서 작성·제시

### 6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통보를 해야 하는 대상(제6항)

-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사업자
- 전문공사의 일부를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것을 서면승낙한 수급인
  - \* 통보예외 : 발주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하는 것을 서면승낙한 경우



#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

생산체계 개편 제도 시행일

공공공사 : 2021.1.1 / 민간공사 : 2022.1.1

전문업체 간 간소시업 방식의 종합공사 수발 및 중립업체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은 2024.1.1부터 시행

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\*, 유튜브\*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\* 국토부 홈페이지 : 정책자료 > 정책정보 > 건설 > 110번, 111번.

\* 유튜브 : 건설 CEO를 위한 리더스 브리핑

! 강의동영상, 설명자료, FAQ 포함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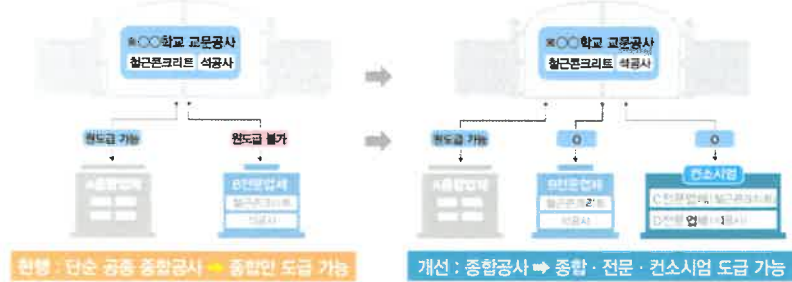
### 1 생산체계 개편 추진 배경

#### 현황 및 문제점

- '76년 전문건설업 도입 후, 40여년간 종합·전문사업자간 업무 영역을 엄격히 제한하는 생산구조 유지 (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규제, 2개 공종이상 종합공사의 원도급은 종합건설사업자만, 전문공사 원·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만 가능하도록 업역을 규제)
- 종합건설사업자는 시공기술 축적보다는 하도급관리, 입찰 영업에 치중하며, 실제 시공은 하도급업체에 의존
- 전문건설사업자는 사업물량 대부분을 종합건설사업자의 하도급에 의존, 수직적 원하도급 관계 고착화로 저가 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 확산
- 발주자의 건설사업자 선택권을 제약

#### 개/선/방/안

- 업역과 업종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해오던 '칸막이'를 없애고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업역 구조를 전면 개편



### 2 건설공사의 시공자격(법 제16조제1항)

**원칙** 건설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(제1항)

**예외** 다음의 경우, 해당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 가능

-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원도급 가능한 경우
  - 2개 업종 이상의 전문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(제1항)
  - 2인 이상의 전문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평관리·하자 책임구분 등을 고려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도급 받는 경우(제3항)
    - ※ 전문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종합공사 원도급참여는 '24. 1. 1부터 허용(부칙 제3조제3항)
-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도급 가능한 경우
  - 종합업종이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세부 전문공사의 원·하도급 허용(제4항)
    - ※ 종합업체의 2억원미만 전문공사 원도급은 '24.1.1부터 허용(부칙 제1조제4항)

### 3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경우

-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,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하는 경우(제1항제2호)

종합건설업체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부계약자로 참여 가능 하고, 2개 이상의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체도 주계약자로 참여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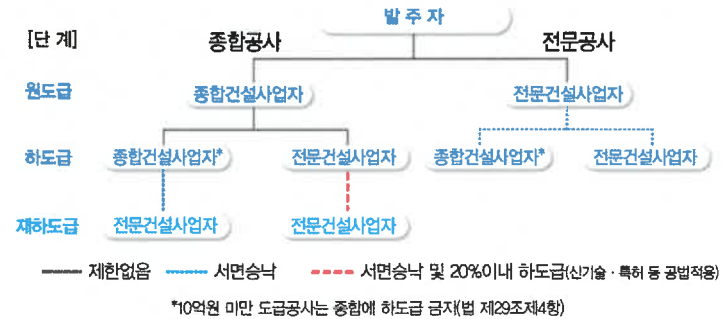
### 3 종합·전문 상호시장 진출시 구비요건(법 제16조제3항)

- 상대 업역진출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(수의계약: 계약체결 전)까지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도 유지하여야 함
  - 이 경우 발주자는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확인하여야 함
- ※ 다만, 2개 업종이상의 전문공사를 등록한 전문건설업체가 해당 업종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하도급 받는 경우는 제외

### 4 원하도급 체계 개편 주요내용

#### 개편된 원하도급 체계도

#### 1 본(本)업역 도급시: 최대 3단계



#### 2 상대업역 도급시: 최대 2단계

